

KB 지식 비타민

해외 대형은행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과 대응 사례

- 도입
- 해외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례
- 해외 대형은행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 사례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해외 대형은행 대응 사례
- 해외와 한국 대출중개 플랫폼 시장 비교
- 시사점



< 요약 >

- 최근 한국에서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중개 대상 금융상품 범위를 예금과 보험 등 대출 이외의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금융사의 상품 정보와 상품 가입을 위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금융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비교한 뒤 금융사 페이지에서 계약을 체결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대출중개 서비스 확대로 기존 국내은행의 비대면 채널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국내은행은 해외 대형은행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과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호주의 대표적인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각각 ‘너드월렛’, ‘머니슈퍼마켓’, ‘모조’이며 대출, 신용카드, 보험, 입출금 계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

 - 해외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중소 규모 핀테크가 대부분
 - 해외 빅테크는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철수하고 현재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참여하지 않음
- 미국 웰스파코, 영국 HSBC, 호주 커먼웰스 등은 각국의 대출중개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사 상품 정보를 제공

 -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탐색하는 고객군에 접근하기 위한 채널로 대출중개 플랫폼을 고려
 - 이들 고객군이 자주 찾는 일부 상품(신용대출, 모기지 등)에 한해 플랫폼 채널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
- 해외 대형은행들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타사 상품 판매를 위한 채널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 상품·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 중

 - 중개 수수료 수익보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채널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에 우선순위를 둠
 - 씨티은행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출기관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
- 한국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 중

 - 대형 핀테크 토스와 빅테크 카카오페이가 플랫폼 기반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
 -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
- 정부가 주도하여 빅테크가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중개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므로, 국내 규제기관은 한국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

 - 한국은 해외와 비교하여 빅테크가 일부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금융 혁신을 추구하면서 빅테크로 인한 독점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한 빅테크의 책임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도입

- 최근 한국에서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이란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나 빅테크가 대출을 포함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플랫폼을 의미
 - 온라인 플랫폼은 제휴 금융사의 금융상품 정보 및 각 금융사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금융사 페이지에서 계약을 체결
 -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를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함
 -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출 외 보험 등 타 금융상품도 중개하므로 ‘온라인 금융상품중개 플랫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국내에서는 현재 대출 중심으로 중개가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으로 표현
 - 개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판매가 확대 중.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저축은행 및 캐피탈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 은행과도 제휴를 추진
 -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비중은 2020년 1월 1.5%에 불과했으나 2021년 7월 22.2%로 대폭 확대¹
 -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22.2%는 10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중개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75% 이상을 차지(2021년 7월 기준)
-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중개 서비스 확대를 추진
 - 기존 금융기관은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제한이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가 혁신 금융 서비스²로 지정되면서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제한 폐지가 법제화
 -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판매 대상 상품을 기존의 대출에서 예금, 보험, 펀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대출중개 서비스 확대로 기존 국내 은행의 비대면 채널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중개 서비스 활성화는 금융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 향상에 효과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음

¹ 국회의원 윤창현 의원실 배포 자료 참고

²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정된 서비스. 금융 규제 샌드박스란 금융산업 관련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까지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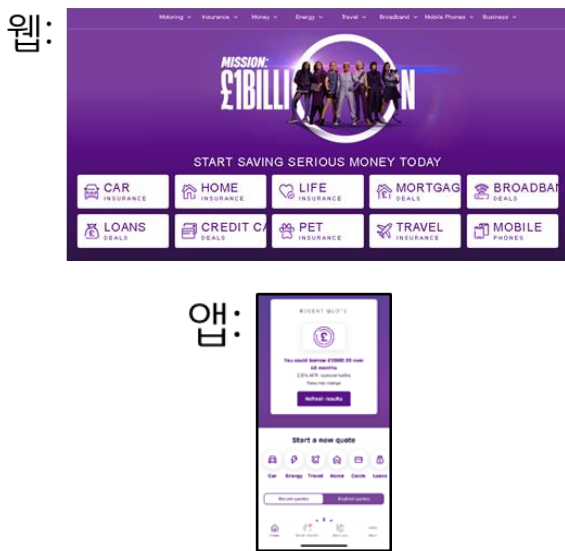


- 국내 은행은 해외 대형은행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과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례

- 미국, 영국, 호주의 대표적인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각각 ‘너드월렛(NerdWallet)’, ‘머니슈퍼마켓(MoneySupermarket)’, ‘모조(Mozo)’ 등이며 대출, 신용카드, 보험, 입출금 계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 해외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중소 규모 핀테크가 대부분
 - 미국 핀테크 너드월렛은 2009년 설립되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영업 중. 2021년 12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천만 명으로 미국 국민의 약 6%에 해당
 - 영국 핀테크 머니슈퍼마켓은 1993년 설립되었으며 금융상품 외에 전기와 가스,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제 비교 서비스도 제공. 2022년 7월 기준 가입자수는 1,080만 명으로 영국 국민의 약 15.8%에 해당

[그림 1] 머니슈퍼마켓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



자료: 머니슈퍼마켓

[그림 2] 머니슈퍼마켓의 대출 조건과 금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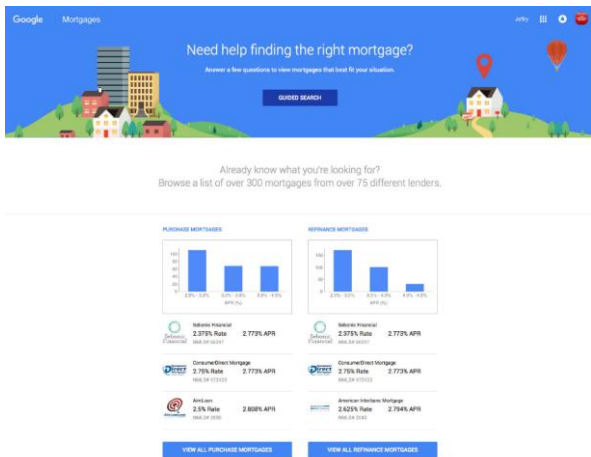
Company	APR Representative	Cost per month	Eligibility
tesco Bank	2.8%	£220.30	Not eligible
be savvi	14.9%	£273.11	Not eligible
Novuna	18.4%	£288.60	Not eligible

자료: 머니슈퍼마켓

- 해외 빅테크는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철수하고 현재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참여하지 않음
- 구글은 영국에서 2012년 모기지, 신용카드, 입출금 계좌, 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컴페어(Google Compare)’를 출시하고, 미국에서는 2015년 같은 이름으로 모기지 비교 서비스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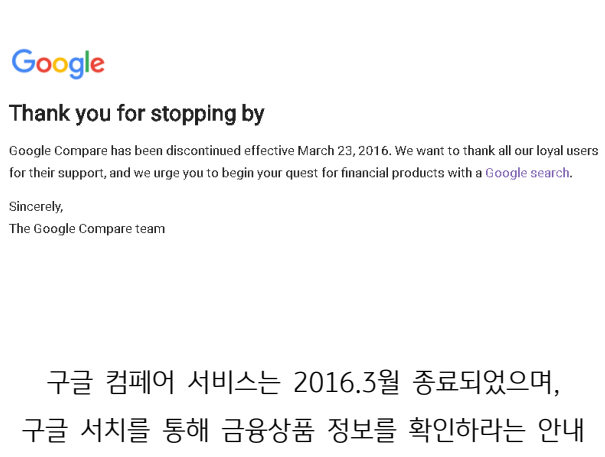
- 영국에서는 2011년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업체 ‘비트댓쿼트닷컴(BeatThatQuote.com)’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시작
-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브로커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시작
-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자 2016년 3월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업 철수
 - 구글의 핵심 수익원은 검색 광고. ‘구글 컴페어’ 서비스로 새로운 방식의 광고 사업 모델 도입을 시도했으나 기존 광고비 수익에 미치지 못해 철수한 것으로 보임

[그림 3] ‘구글 컴페어’ 서비스



자료: 더 파이낸셜 브랜드(The Financial Brand)

[그림 4] ‘구글 컴페어’ 서비스 종료 안내 메시지



구글 컴페어 서비스는 2016.3월 종료되었으며, 구글 서치를 통해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하라는 안내

자료: 구글

■ 해외 대형은행의 비대면 채널로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 사례

- 해외 대형은행들은 ①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②이들이 자주 찾는 상품에 한정하여 플랫폼 채널을 활용
 - 웰스파고, 산탄데르 등 해외 대형은행들은 신용대출, 모기지, 오토론 등 일부 상품에 한해 각국의 대표적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
 - 산탄데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사 모기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을 탐색하는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설명
 - 통계 분석 업체 스탯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금융 소비자의 12퍼센트가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
 - 다양한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보다 신속하게 원하는 상품을 발견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니즈를 보유한 고객이 주된 사용자
 - 해외에서는 대출중개 서비스가 일부 소비자를 위한 니치(niche)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여, 대형은행들은 외부의 대출중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대형은행들은 중소 규모 핀테크 중심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이 기존 대형은행의 비대면 상품 판매 채널을 잠식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

[표 1] 해외 대형은행의 비대면 채널로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 현황

구분	온라인 중개 플랫폼	중개 대상 상품						
		신용대출	모기지	오토론	신용카드	입출금 계좌	자동차보험	
미국	너드윅렛	바클레이스	✓				✓	
		HSBC	✓				✓	
		BBVA	✓					
		산탄데르	✓					
		씨티은행		✓		✓	✓	
		웰스파고		✓		✓		
		BoA			✓	✓	✓	
		체이스				✓		
영국	머니슈퍼마켓	HSBC	✓	✓		✓	✓	
		산탄데르	✓	✓		✓	✓	
		바클레이스	✓	✓		✓		
호주	모조	ANZ	✓	✓		✓		
		NAB	✓	✓		✓	✓	
		씨티은행	✓	✓		✓		
		커먼웰스	✓	✓		✓		
		웨스트팩	✓			✓		
		HSBC	✓			✓		
		산탄데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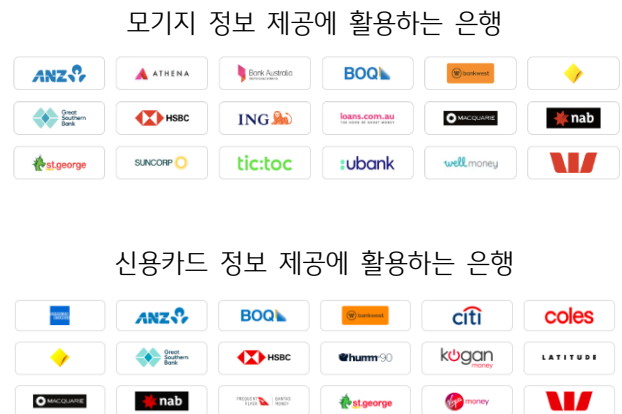
자료: KB경영연구소

[그림 5] 머니슈퍼마켓을 활용 중인 은행



자료: 머니슈퍼마켓

[그림 6] 모조를 활용 중인 은행



자료: 모조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해외 대형은행의 대응 사례

-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최근 정부의 규제 변화와 핀테크·빅테크 성장세에 위협을 느끼고,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
 - 웰스파고의 핵심 경쟁력은 고품질 서비스로 형성된 고객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
 - 웰스파고는 전국 지점과 비대면 채널, 그 동안의 명성을 기반으로 고객과 관계를 형성
 - 미국 내 웰스파고 지점은 4,777개(2020년 5,032개), 모바일 활성이용자수³는 2,730만 명(2020년 2,600만 명)
 - 웰스파고는 2021년 연차보고서에서 최근 규제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인정
 - 웰스파고는 규제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핀테크·빅테크는 물론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신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감소와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해외은행들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 서비스 경쟁력 강화 중
 - 웰스파고는 2022년 상반기 UI·UX 개선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홈페이지를 개편. 질의응답과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 비서 ‘파고(Fargo)’ 개발을 추진
 - 플랫폼을 자사 상품 정보 제공을 위한 채널로 활용하며, 타사 상품 판매를 위한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 중개 수수료 수익보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고유한 채널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에 우선순위를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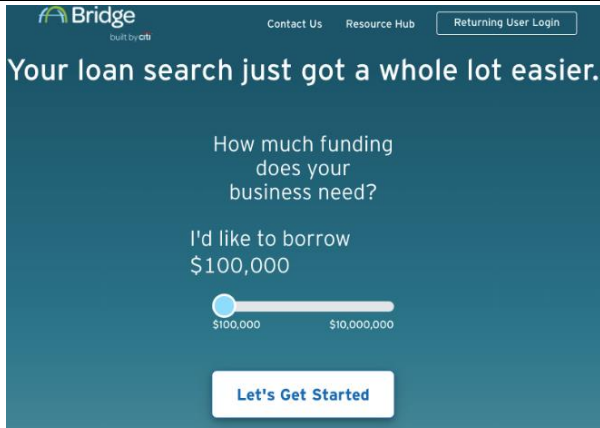
- 씨티은행은 2021년 9월 중소기업을 지역 대출기관과 연계해주는 대출중개 서비스 ‘브리지 빌트 바이 씨티(Bridge built by Citi)’를 출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중
 - 씨티은행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담당자가 대출 조건을 입력하면, 대출 가능 기관을 제시하여 비교·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미국에서 지역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은행의 대면 창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
 - 미국의 소규모 지역 은행은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중소기업을 접촉하기 위한 자체적인 디지털 채널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³ 지난 90일 동안 모바일 기기로 웰스파고에 로그인한 개인 또는 소호 고객 수



- 씨티은행은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은행을 디지털 채널을 통해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측 모두에 편익을 제공

[그림 7] 'Bridge built by Citi' 서비스



자료: 씨티은행

[그림 8] 'Bridge built by Citi' 파트너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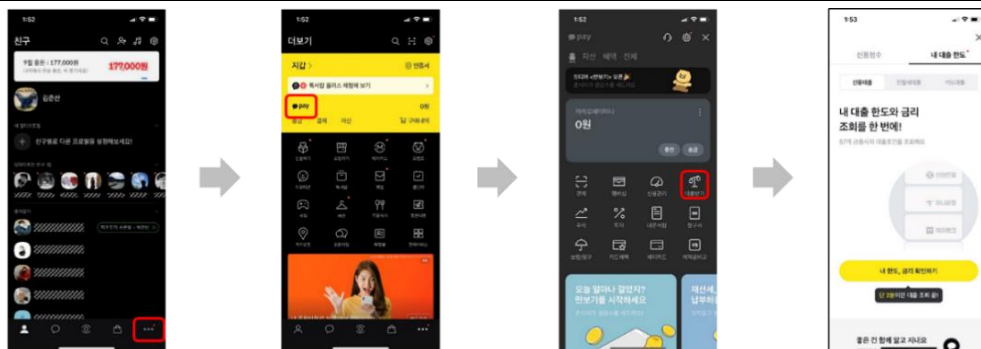


자료: 씨티은행

■ 해외와 한국 대출중개 플랫폼 시장 비교

- 한국은 대형 핀테크 토스와 빅테크 카카오페이가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차이를 보임
 - 토스는 2022년 1분기 기준 MAU가 1,427만 명(전체 국민의 약 27.7%)에 이르고, 카카오페이는 2022년 6월 기준 MAU가 2,156만 명(전체 국민의 약 41.8%)이고 누적 가입자 수는 3,815만 명(전체 국민의 약 73.7%)에 달함
 - 대출중개 서비스 접근을 위해 해외에서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능
 -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를 실행하면(그림 9 ③ 참조) 해외에서 전용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그림 1 '앱' 참조)과 동일한 단계에 이를 수 있음

[그림 9] 카카오톡을 통한 카카오페이 대출중개 서비스 접근



- ① 카카오톡 시작 화면 ② 카카오톡 더보기 화면 ③ 카카오페이 시작 화면 ④ 대출중개 서비스

자료: KB경영연구소



- 구글 등 해외 빅테크와 달리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국내 대출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지속
 - 카카오페이는 2022년 2분기 실적보고서에서 대출중개 서비스가 수익 다변화와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힘
 - 카카오페이의 2022년 2분기 기준 대출중개 서비스를 통한 대출 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직전 분기 대비 42% 증가
 - 토스의 경우 2019년 8월 대출중개 서비스 시작 이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누적 대출 실행액이 약 14조 원, 누적 이용자 수는 460만 명에 달함
-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상품 비대면 채널로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활용 중
 -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통해 신용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
 -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월세대출 상품 정보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핀테크 핀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용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
 -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외국계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 등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용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
 - 채널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은 향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정부 주도로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중개 서비스 확대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해외에서는 온라인 대출중개 확대를 위한 별도 규제 변화가 없으며, 구글 등 빅테크가 잠시 참여하였으나 철수하여 현재 대출중개는 ‘일부 핀테크만의 영역’으로 자리잡음
 - 일본은 2021년 금융서비스중개업⁴을 도입했으나 온라인 플랫폼만이 아닌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규제 변화에 해당
 - 영국과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중개 서비스를 위한 별도 규제 변화는 현재 없음
 - 한국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대출중개 서비스 확대 조치를 적극 추진 중
 - 한국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중개 서비스는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향후 중개하는 상품 범위와 참여하는 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⁴ 일본에서 2021년 11월에 도입된 라이선스의 하나로, 다수 업권 금융상품 중개가 가능한 제도. 기존 여러 법으로 구분되어 있던 중개업과 대리업을 새로운 중개업으로 통합, 한 사업자가 다수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짐



[표 2] 해외와 한국 대출중개 플랫폼 시장 비교

구분		해외	한국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핀테크	O - MAU가 국민의 약 6%, 가입자가 국민의 약 15.8%인 중소형 핀테크	O - MAU가 국민의 약 27.7%인 핀테크 및 중소형 핀테크
	빅테크	X - 구글 진입 후 철수	O - MAU가 국민의 약 41.8%, 가입자가 국민의 약 73.7%인 빅테크
대형은행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활용	O - 웰스파고, 산탄데르 등 대형은행 대부분이 외부 플랫폼에 자사 상품 정보 등록	△ -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외부 플랫폼에 자사 상품 정보 등록
	자사 플랫폼에 서 타사 상품 정보 제공	△ - 자사 상품 정보만 제공하며, 씨티은행이 특정 분야에 한해 타사 상품 정보 제공	X -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타사 상품 판매 채널로 개방하지 않음
정부의 관련 규제 개선 적극성		보통	높음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		보통 - 현재 대출 중개는 일부 니치 마켓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음	높음 -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부상할 가능성

자료: KB경영연구소

■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대출중개업 활성화는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빅테크의 판매 채널 독점 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
 - 빅테크의 특정 서비스 독점 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택시 호출 서비스, 검색, 전자상거래 등에서 나타난 바 있음
 - 카카오톡⁵는 택시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가격 정책을 적용하여 논란이 됨
 -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 및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⁵ 최초 서비스명은 '카카오 택시'이며, 이후 '카카오T'로 서비스명 변경. 사업자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이 입점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021.7월 공정위 조사를 받음
- 한국은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이 대출중개업에 참여하여 해외와 비교하여 빅테크가 일부 금융 상품 판매 채널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카카오페이의 대출중개 서비스는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통해 토스 등 핀테크 서비스에 대비하여 보다 손쉽게 독점적 지위를 갖출 가능성이 존재함
 - 구조가 복잡하여 다수 상품에 대해 일관되고 간단한 비교가 어려운 상품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판매 채널 독점 가능성이 낮음
-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금융 혁신을 추구하면서 빅테크로 인한 독점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테크와 핀테크 간 차등적 규제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
 - 빅테크 플랫폼이 대출상품에 대해 독점적 공급 채널로 자리매김하게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대출상품의 입점을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 빅테크 플랫폼은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업자인 은행과 동등하거나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의 경우에는 은행이 아닌 빅테크가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손해배상 관련 중개업자보다 판매업자가 보다 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⁶
 - 금융당국은 중개업자가 빅테크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 혁신의 확산을 위해 핀테크에 대해서는 빅테크보다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
 - 핀테크는 빅테크에 대비하여 규모가 작고 경제 및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음

<연구위원 김준산(junsan.kim@kbf.com, 02-2073-2861)>

⁶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중개업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등록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손해 발생시 ‘사용자책임’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사용자책임이란 사용자와 사용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배상하여야 함